

의안번호	2217987
의 퇴 인	용혜인 의원
회 답 일	2026. 5. 8.
추계번호	26A1851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수급권자)	- 공유지분 이익배당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지급함(제1항) 1. 대한민국 국민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지방자치법」 제12조의 주민에 해당하는 자 및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이하 “실거주민”이라 한다)	의무규정
2	안 제13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유지분 이익배당을 위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관리함	의무규정
3	안 제14조(공유지분 사업이익의 징수)	기후에너지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사업이익을 징수하여 특별회계에 전입하여야 함	의무규정
4	안 제19조(공유지분 이익배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공유지분 이익배당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 처리·관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지분 이익배당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5조(수급권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3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3	안 제14조(공유지분 사업이익의 징수)	
4	안 제19조(공유지분 이익배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2. 상세 사유

가. 재정수입

- 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사업이익을 징수하면 재정수입이 발생함
 - 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 등에게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공유지분 이익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그 재원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사업이익을 징수하도록 하고, 동 금액을 공유지분 이익배당을 위한 특별회계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14조)
 - － 제정안이 신설하는 공유지분 이익배당을 위한 특별회계는 공유지분 사업이익 징수액과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안 제15조),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지급으로 인한 지출을 세출로 함(안 제16조)
- 다만, 현재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선정되어 있지 않으며, 현시점에서 향후 선정될 사업자를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징수할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사업이익을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전기사업법」에 따라 해상풍력 사업으로 허가를 받은 사업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해상풍력 사업자 현황

사업자	사업명	준공연월	2025년 공공지분*(%)
안산시	누에섬	'09.12	10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월정해상1(실증)	'12.02	100
	월정해상2(실증)	'12.05	100
한전 전력연구원	군산1(실증)	'17.01	100
	군산2(실증)	'21.12	100
제주도청	행원연안 17호기	'14.03	100
탐라해상풍력발전	탐라해상	'17.09	63
영광풍력발전	영광해상	'18.12	46
한국해상풍력	서남해실증	'19.10	100
전남TP	전남1(실증)	'15.02	100
	전남2(실증)	'16.11	100
	전남3(실증)	'18.11	100
	전남4(실증)	'22.03	100
제주에너지공사	제주 행원연안(실증)	'23.12	100
제주한림해상풍력	한림해상	'24.10	56.9
전남개발공사	영광 약수해상	'25.04	100
전남해상풍력	전남	'25.05	0

주: *공공지분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지분을 의미함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재정지출

- 제정안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등에게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공유지분 이익배당을 지급하고, 공유지분 이익배당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공유지분 이익배당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조의2제1항¹⁾에 따라 국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획득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일정 지분에서 발생하는

1) 제정안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9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함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조의2(공유지분의 확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공유지분(다만, 최대 100분의 20으로 한다)을 국가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익으로 동 제정안에 따라 국민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

－ 공유지분 이익배당액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공유지분이 있는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부터 얻은 당기순이익에 공유지분의 비율을 곱한 액수를 수급권자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안 제5조제2항)

○ 제정안은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사업이익을 대한민국 국민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공유지분 이익배당을 위한 특별회계의 재정수입(공유지분 사업이익 징수액)과 동일한 규모의 재정지출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유지분 이익배당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이에 따른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 다만, 공유지분 이익배당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윤주철	02-6788-4655	yjc@nabo.go.kr